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신 기관의장

람

제1728호 2023. 2. 1.(수)

차 례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3호 2023년도 「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」 및 「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」 신청 안내 ————— 1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5호 「2023년 공동주택관리사업」 신청 안내 공고 ——— 6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-123호

2023년도 「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」 및 「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」 신청 안내

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,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등 관계자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2023년도 『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』 및 『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』 신청을 안내(공고)하오니, 해당 공동주택과 입주자께서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
2023. 2. 1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

□ 운영개요

- 운영목적 :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분쟁과 갈등 해소
- 신청대상 : 관내 공동주택 거주자 및 관리주체
- 상담장소 : 선정단지 내 관리사무소, 회의실 또는 신청인 세대 내 등
- 상담사 : 변호사, 주택관리사, 회계사, 층간소음관리사 등 관계전문가
- 상담내용
 - 공동주택 입주자 간, 입주자와 관리주체 간의 분쟁 조정
 - 층간소음 및 누수 등 세대 간의 갈등 중재
 - 에너지절약 및 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컨설팅 등

□ 신청개요

- 신청기간 : 연중 실시(총 10개 단지 계획으로 예산 범위 내 실시)
- 신청장소 : 서구청 주택관리과(문의 : 주택민원팀 ☎ 032-560-3121)
-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팩스, 이메일 접수
 - 팩스 : 032- 560-2736, 이메일 : sueinfull@korea.kr
 - * 팩스, 이메일 접수시 우리 구에 확인 전화 요망
- 신청서류 :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신청서 1부(붙임1 참조)
 - * 서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 또는 새소식에 안내문 및 서식 게재

2.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

□ 운영 개요

- 운영목적 :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대한 단지별 맞춤형 방문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의 자치역량 강화
- 신청대상 :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
- 교육대상 :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, 선거관리위원회 위원, 관리주체, 입주자등
- 교육장소 : 선정단지 내 회의실 등
- 교육시간 및 인원 : 단지별 2시간 정도(10명 내외)
 - * 교육시간은 신청단지와 협의하여 조율 가능
 - * 인원은 최소 7명 이상 최대 13명 이하로, 인접 단지와 공동 신청 가능
- 강 의 :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소속 전문강사
- 교육내용
 - 공동주택관리법령, 관리규약 및 제규정에 관한 사항
 -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
 -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,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
 -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,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절차
 - 기타 단지별 관리 취약분야의 요청사항 및 현안문제 자문 등

□ 신청개요

- 신청기간 : 연중(총 8개 단지 계획으로 예산범위 내 선착순 실시)
- 신청장소 : 서구청 주택관리과(문의 : 주택민원팀 ☎ 032-560-3121)
- 신청자 :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
- 신청방법 : 방문(선착순)
- 신청서류 :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실 신청서 1부(붙임2 참조)
(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첨부)

* 서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 또는 새소식에 안내문 및 서식 게재

□ 조건 및 유의사항

- 교육단지는 선착순으로 선정하며, 신청서 제출시 보완사항이나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 후순위자 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교육은 총 8회(회별 1개 단지로 8개 단지 실시)로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상사유로 변동(증가 또는 감소)될 수 있으며, 선정된 단지에서 취소를 할 경우 순차적으로 후순위 공동주택을 교육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.
- 교육인원은 단지별로 최소 7명 이상 최대 13명 이하를 충족해야 가능하므로 참석 가능한 인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 바랍니다. 다만, 1개 단지에서 인원이 적을 경우 인접 단지와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함.
- 선정된 단지에 한하여 결과를 통보할 예정으로, 교육 일정(시간 등)은 선정 단지 및 전문강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, 2023. 2월 ~ 11월 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.
-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및 아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이어야 함.
 - * 수강생 간의 충분한 이격거리 및 교육 장소 확보, 전원 마스크 착용 및 체온 측정, 고열 또는 증상이 있는 수강자의 출입금지 조치 등
 - * 추후 코로나 방역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- 붙임 1.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신청서 1부.
2.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 신청서 1부. 끝.

<붙임 2>

서식 1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 신청서

단지명		연락처	
주 소			
참여인원	<p>총○○명 (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○명,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○명, 관리주체 ○명, 입주자등 ○명)</p> <p>*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소 7명, 최대 13명으로 인원을 제한함</p>		
신청사유	교육내용 확인 후 간략히 기재		
단지 내 관리 취약분야	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		
기타 요청사항	<p>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</p> <p>교육을 원하는 일시 등 기재</p>		
<p>위와 같이 찾아가는 맞춤형 교실 운영에 따른 교육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3년 월 일</p> <p>신청인 : ○○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○ ○ ○ (서명 또는 인)</p>			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-155호

「2023년 공동주택관리사업」 신청 안내 공고

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단지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)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2023년 『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』, 『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』, 『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』, 『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(차수판)설치 지원사업』 및 『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』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 안내를 하고자 공고하오니, 공동주택 입주자(소유자)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
2023. 2. 1.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공동주택관리사업 신청 안내문

신청대상 및 내용

○ 지원대상: 관내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 주택) 단지

구분	사업명(택일)	지원신청단지
1	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	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 (2012. 12. 31.이전 준공, 의무+비의무관리)
2	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	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 (2002. 12. 31.이전 준공, 의무+비의무관리)

○ 사업내용

구분	사 업 내 용	
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용부위(옥상, 외벽, 공용계단, 공용현관문 등) 보수·보강 - 공용시설(경로당 보수, 상·하수도 시설) 보수·보강 -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, 방범용 CCTV설치(단지 내) -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 	
사업별 우선 고려 대상	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	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
	- 시설노후도 및 심각도 고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지내 통과도로 관리사업비 지원 -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비 지원

※ 모든 수혜사업은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.

- 신청기간: **2023. 2. 1.(수) ~ 3. 3.(금)**
- 신청장소: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(☎ 560-3002~4)
- 신청자: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

□ 구비서류

-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또는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
- 사업계획서 1부
- 동의서(등기 상 소유자) 1부
- 견적서 2부

□ 지원규모

○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(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)

총사업비	지 원 기 준		비 고
	의무관리	임의(비의무)관리	
7백만원 이하	전 액	전 액	
7백만원 초과 ~ 2천만원이하	총사업비 x 75/100범위내	총사업비 x 85/100범위내	
2천만원 초과 ~ 3천만원이하	총사업비 x 70/100범위내	총사업비 x 80/100범위내	
3천만원 초과 ~ 4천만원이하	총사업비 x 65/100범위내	총사업비 x 75/100범위내	
4천만원 초과 ~ 5천만원이하	총사업비 x 60/100범위내	총사업비 x 70/100범위내	

※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, 임의(비의무)관리 단지는 3천5백만원으로 한다.

※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

- 의무관리: 300세대 이상,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
- 임의(비의무)관리: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주택

2.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신청 안내문

※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

□ 신청 대상 및 내용

○ 신청대상: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(비의무관리 아파트, 연립, 다세대 주택) 중
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(2002.12.31. 이전 준공)

※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

- 의무관리: 300세대이상 이상 공동주택,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
- 임의(비의무)관리: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주택

○ 선정방법: 관리대상 중 노후도 및 준공년도 등을 감안하여 단지 선정

- 사업내용: 공동주택 안전점검,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
- 신청기간: **2023. 2. 1.(수) ~ 3. 3.(금)**
- 신청장소: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 (☎ 560-3002~4)
- 신청자: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

구비서류

-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 1부
- 현장사진 및 입주자등 동의서류(소유자, 거주자 현황 포함)

3.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(차수판)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

※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

신청대상 및 내용

- 지원대상: 관내 공동주택 지하·반지하 세대 및 지하주차장(의무+비의무관리)
- 사업내용: 세대별 현관문, 창문 및 공용부(공동현관, 공동계단, 지하주차장) 등 침수방지시설(차수판) 설치 비용 지원
- 신청기간: **2023. 2. 1.(수) ~ 3. 3.(금)**
- 신청장소: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(☎ 560-3002~4)
- 신청자: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

지원규모

-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(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)

총사업비	지 원 기 준		비 고
	의무관리	임의(비의무)관리	
7백만원 이하	전 액	전 액	
7백만원 초과 ~ 2천만원이하	총사업비 x 75/100범위내	총사업비 x 85/100범위내	
2천만원 초과 ~ 3천만원이하	총사업비 x 70/100범위내	총사업비 x 80/100범위내	
3천만원 초과 ~ 4천만원이하	총사업비 x 65/100범위내	총사업비 x 75/100범위내	
4천만원 초과 ~ 5천만원이하	총사업비 x 60/100범위내	총사업비 x 70/100범위내	

※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, 임의(비의무)관리 단지는 3천5백만원으로 한다.

※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

- 의무관리: 300세대 이상,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
- 임의(비의무)관리: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주택

□ 구비서류

-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(차수판)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1부
- 사업계획서(위치도 및 현장사진 포함) 1부
- 동의서(등기 상 소유자) 및 견적서 각 1부

4.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

※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

□ 신청대상 및 내용

- 지원대상: 관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시설(의무+비의무관리)
- 사업내용
 - 건축 설비(냉·난방기, 조명 등) 설치
 -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동
 - 기타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 -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94조의2, 별표21의2에 부합하는 사업
- 신청기간: **2023. 2. 1.(수) ~ 3. 3.(금)**
- 신청장소: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(☎ 560-3002~4)
- 신청자: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

구비서류

-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
- 사업계획서 1부
- 동의서(등기 상 소유자) 1부
- 견적서 2부

 지원규모

-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(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)

총사업비	지 원 기 준		비 고
	의무관리	임의(비의무)관리	
7백만원 이하	전 액	전 액	
7백만원 초과 ~ 2천만원이하	총사업비 x 75/100범위내	총사업비 x 85/100범위내	
2천만원 초과 ~ 3천만원이하	총사업비 x 70/100범위내	총사업비 x 80/100범위내	
3천만원 초과 ~ 4천만원이하	총사업비 x 65/100범위내	총사업비 x 75/100범위내	
4천만원 초과 ~ 5천만원이하	총사업비 x 60/100범위내	총사업비 x 70/100범위내	

※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, 임의(비의무)관리 단지는 3천5백만원으로 한다.

※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

- 의무관리: 300세대 이상,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
- 임의(비의무)관리: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주택